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6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조경태 · 고동진 · 서명옥
김예지 · 곽규택 · 김형동
윤영석 · 김소희 · 정성국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u>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u>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